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취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처리(김한주)

***의 아래 취득세(부동산) 신고건에 대하여 경정청구서가 접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 처리코자 합니다.

1.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내역

가. 납 세 자 : ***

나. 과세대상 : *****

다. 신고납부금액 : *****

2. 경정청구사유 : 증여계약해제

가. 청구인 ***는 2015. 10. 1.부동산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 ***** 신고납부한 후 2015. 11. 23.증여계약해제증서(확정일자:2015. 11. 23. 서울중앙지방법원)을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,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청구함.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세기본법 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

나.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

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(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)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·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화해조서·인낙조서

2.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

4. 검토결과

가. 청구인의 해당 취득물건*****은 증여계약 당시 일반건축물로 증여계약서대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상태로 2015. 11. 18. 층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였음. 건물1층→101호로 구분등기함에 따라 증여물건(건물 및 대지면적)에 변동이 있어, 2015. 10. 1.증여계약(당초)은 2015. 11. 22.계약해제(확정일자:2015. 11. 23. 서울중앙지방법원)한 후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, 2015. 11. 23. 동일 집합건물(*****)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 *****을 신고납부하였음.

